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43
----------	------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 나. 장애인 보조기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 다. 2024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동남,서북)
- 위탁기간 : 2024. 5. 1. ~ 2027. 4 .30 . (3년)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923,124천원('24년 예산안 기준)
 - 동남센터(457,882천원):인건비287,242천원/운영비60,640천원/민간위탁사업비 110,000천원
 - 서북센터(465,242천원):인건비287,242천원/운영비 68,000천원/민간위탁사업비 110,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수탁기관 적정성심의)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수행 필요
-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가 용이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 상담·평가 사례관리 사업
- 보조기기 보급, 대여 사업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사업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사업
-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 사업
-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성 향상 사업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 서북)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1) (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²⁾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금번 동의안은 2024.4.30.위탁만료로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2024.4.5.시행)에 따라 재계약은 1회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제12조제3항³⁾의 조항을 적용받아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 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
- 3)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4.5.14., 2015.7.30.>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
-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0.4.>
- [본조신설 2009.7.30.]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수탁사무는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임.

〈수탁사무의 내용〉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2 민간위탁의 추진 경위 및 개요

가. 민간위탁 추진경위

- 금번 상정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4)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 4)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2.30.>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전문개정 2017. 7. 13.]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에 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표1〉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위탁기간	동남: '18.2.28. ~'21.2.27.(3년) ※시의회 동의: 2014.3.4. 서북: '18.5.1. ~'21.4.30.(3년) ※시의회동의: 2017.12.15.	'21.5.1~'24.4.30. (3년)	'24.5.1.~'27.4.30. (3년)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재위탁(예정)
수탁법인	(재)푸르메	(재)푸르메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2〉 동남,서북보조기기센터 시설현황

구분	동남	서북
위치	강동구 고덕로 201(고덕동)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관할 자치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6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6개)
시설규모	313.18㎡ (지하1층, 지상1층,2층)	254.21㎡ (지하2층, 지상3층)
인력	6명(센터장 포함)	6명(센터장 포함)

3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 서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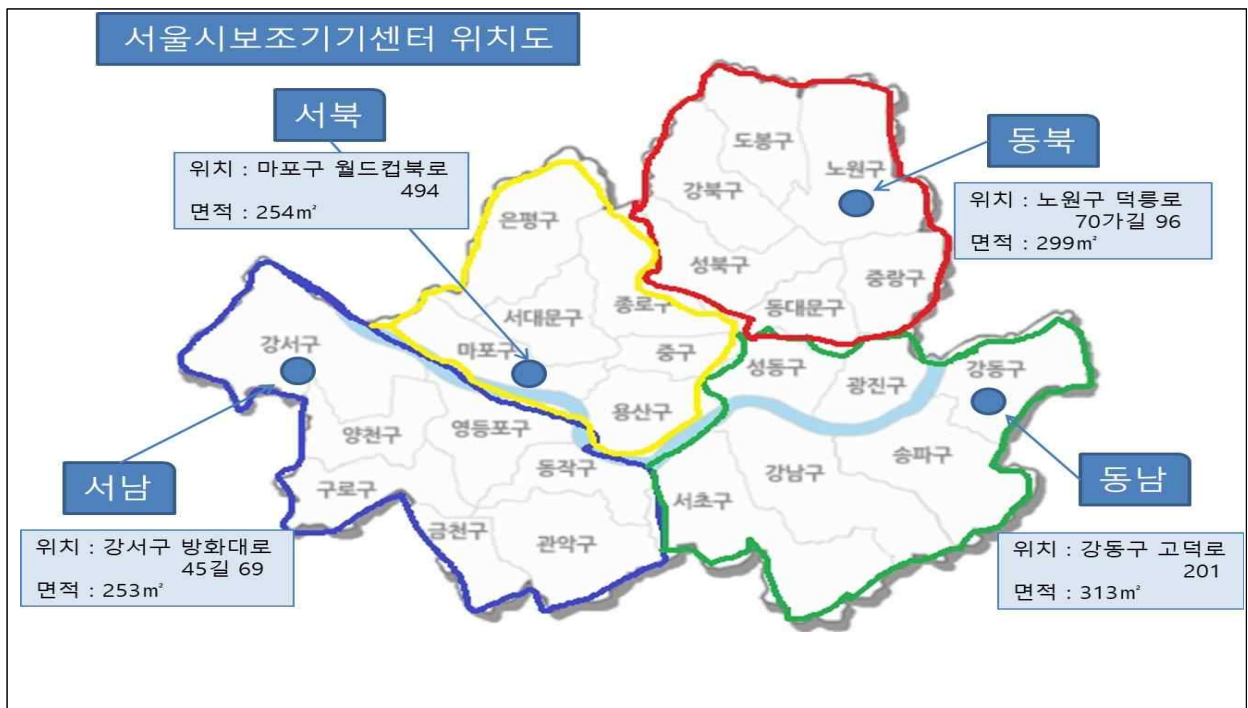
가. 운영현황

- 서울시보조기기센터는 총 4개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센터는 6~7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고 보조기기서비스를

지원 (제작, 제조, 임대, 수리 등) 하여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표3〉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위탁법인	관할 자치구	인력	위탁기간(개소일)
동남	(재) 푸르메	강동, 광진, 성동, 송파, 강남, 서초	6명	'21.5.1.~'24.4.30. (08.12.)
동북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 동대문	6명	'23.1.1~'25.12.31. (14.8)
서남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6명	'23.1.1~'25.12.31 (08.12)
서북	(재) 푸르메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 용산, 중구	6명	'21.5.1.~'24.4.30. (18. 5.)



나. 주요실적

- 동남·서북보조기기센터의 최근3년간 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4〉 연도별 서비스 실적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실적

연도	지표	계	상담·평가 및 시험적용	임대 및 현장적용	후원 연계	맞춤제작 및 개조	사례관리	AAC 서비스
2021	목표량	76,655	2,080	72,000	330	300	1,685	260
	실적	81,621	2,372	76,146	423	359	2,056	265
	달성률	106	114	105	128	119	122	101
2022	목표량	85,048	2,450	80,000	178	325	1,771	324
	실적	82,677	2,833	82,106	196	500	2,697	305
	달성률	104	115	102	110	153	152	94
2023	목표량	84,698	2,350	80,000	128	490	1,446	284
	실적	83,436	2,981	76,474	201	532	2,972	276
	달성률	99	127	96	157	109	206	97

-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실적

연도	지표	계	상담·평가 및 시험적용	임대 및 현장적용	후원 연계	맞춤제작 및 개조	사례관리	AAC 서비스
2021	목표량	21,200	3,336	16,080	50	754	500	480
	실적	39,985	4,137	33,339	185	772	1,050	502
	달성률	189	124	207	370	102	210	105
2022	목표량	25,273	3,505	20,085	30	664	524	465
	실적	51,083	4,338	44,509	45	844	993	354
	달성률	202	124	222	150	127	190	76
2023	목표량	30,031	3,251	25,178	30	501	606	465
	실적	75,599	4,423	68,207	272	853	1,345	499
	달성률	252	136	271	906	170	222	107

4 민간위탁의 타당성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약칭:장애인보조기기 법)」 제4조⁵⁾ 및 동법 제14조⁶⁾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⁷⁾에도 보조기기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 5)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7)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 및 개조, 수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8)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 운영은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전문적인 보조공학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8)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자원 확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상기와 같이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 운영 사무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욕구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맞춤 제작 및 개조,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 운영은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적 서비스 기술을 지닌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위탁 사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장애인 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맞춤형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43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 나. 장애인 보조기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 다. 2024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무명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동남,서북)
- 위탁기간 : 2024. 5. 1. ~ 2027. 4. 30.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923,124천원('24년 예산안 기준)
 - 동남(457,882천원), 서북(465,242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수탁기관 적정성심의)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률성 필요
 -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가 용이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 상담·평가 사례관리 사업
- 보조기기 보급, 대여 사업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사업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사업

-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 사업
-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성 향상 사업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협력지원팀 이진희 (☎ 2133-7465)